

# 서울에너지공사 대학생 학자금 대부 지침

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자녀를 둔 우리 공사 직원에 대하여 대학생 학자금을 대부함으로써 직원의 생활 안정과 후생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

## 관련근거

### 복리후생규정 제8조(후생비 지급)

- 제8조 제1항 10호(대학생 자녀 학자금 대부)에 근거하여 공사의 직원의 자녀에 대하여 대학생 학자금 신청시 대부하여 줄 수 있음

## 대부금의 재원 및 상환

- 사내근로복지기금 대부금은 동 기금에 상환
- 공사 예산(장기대여금) 대부금은 동 예산에 상환

## 대부 대상 : 공사 직원의 대학생(국내 및 국외 대학) 자녀

## 대부금 지급기간 : 고등교육법 제31조(수업연한)에 의한 학기로 함

## 대부금 범위

- 1인에게 대부할 수 있는 금액은 등록금 납부 금액(입학금, 수업료, 기성회비, 학생회비로 고지된 금액)으로 하되 만원 미만은 절사함
- 장학금, 면제금액 등은 대부금에서 제외 함

## 대부금 이율 : 대부금의 이율은 무이자로 함

## 시행일자 : 사장 결재일로부터 시행

※ 붙임 : 서울에너지공사 대학생 학자금 대부 지침 1부. 끝.